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개정 안내

1. 관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1252(2022.3.11.)
2. 위 호와 관련하여 '제85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('22. 3. 10.)'결과 해외입국자 사전입국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변경내용 : 음성확인서 발급 지정기관 기준 해제
 - (기존) 필리핀 · 우즈베키스탄의 경우,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인정
 - (변경) 지정 검사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나. 시행일 : '22. 3. 14.(월) 국내 도착 입국자부터 적용
3. 아울러 기존에 안내한대로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가 적용되나, 이 경우 확진 이력은 PCR 검사 결과만 인정(신속항원검사는 인정불가)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(국·영문). 끝.

교 육 부 장



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박현식

행정사무관

김미희

코로나19대응 전결 2022.3.11.
학교상황총괄 신광수
과장

협조자

시행 **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 ((2022.3.11.))** 접수 ()
과-887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3-2 / <https://www.moe.go.kr>
동 산업자원통상부 (어진동)

전화 044-203-7140 전송 044-203-7079 / root77777@korea.kr / 공개